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및 오남용 사례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신뢰사회의 기본입니다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Contents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및 오남용 사례

-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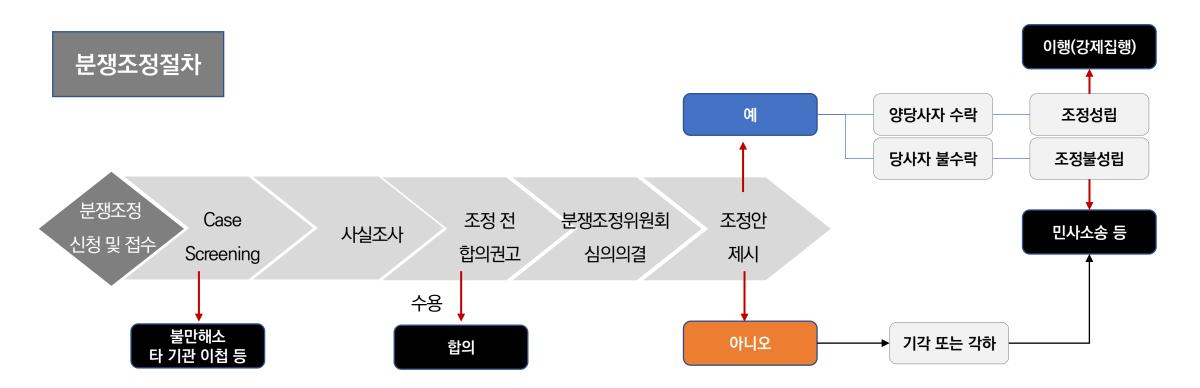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 ☞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요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절차

분쟁조정제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 😈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요
 - ▶ '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현황







침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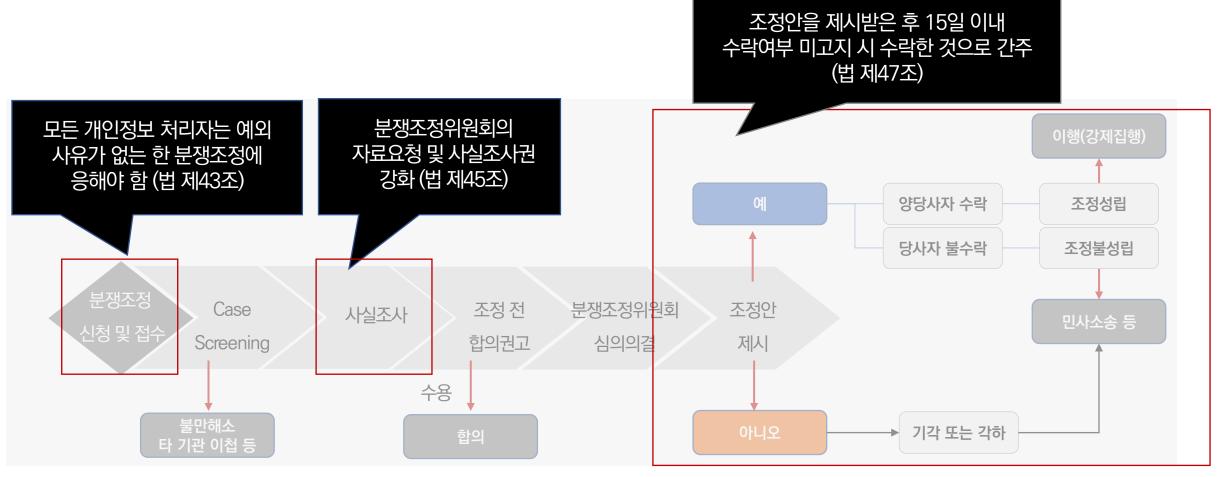
전체 분쟁 유형의 63.9% 차지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 ☞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분재조정 제도 변화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선거운동 관련 연락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사건 개요

조정 및 합의 결과

- 피신청인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신청인의 사전 동의없이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였다며 침해행위 중지(정보삭제)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피신청인은 합의금 지급 및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 제안
-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조정 전 합의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동의 없이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사건 개요

위원회의 판단 주요내용

조정 및 합의 결과

- 피신청인(지차체)은 ○○법원 재판부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법원에 ① 출입국 시실증명서,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공문을 제공하였는데, ① 출입국 사실증명에는 신청인1의 성명・국적・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출입국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②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신청인1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신청인2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신청인들의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공문에는 신청인1의 기초생활수급 책정일자 중지일자 중지사유 등이 기재됨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법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제18조) 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

- 피신청인이 법원 재판부에 제공한 ① 출입국 사실증명서,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공문 중 ②, ③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 피신청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쟁점 조항 : 법 제18조 제2항, <u>제26</u>조 제5항

피신청인(지방자체단체)은 신청인1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 양당사자간 조정안 조정 미수용에 따라 불성립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사건 개요

위원회의 판단 주요내용

조정 및 합의 결과

- 피신청인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피신청인1에서 출생한 자녀의 사진을 무료 촬영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2는 앨범을 제작하여 산모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신청인1의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촬영 사진 중 일부를 성별, 생일, 부모 이름과 함께 게시
- 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1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위 이벤트에 참여하였는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벤트 참여를 통해 작성된 게시글이 노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1차 → 합의완료)
- 이후 신청인은 특정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여전히 이 사건 게시글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재차 신청(2차 분쟁조정신청)

- 피신청인들은 접근 통제 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게시글이 외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과거 합의가 이뤄짐
- 다만 과거 합의로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할 때에도 외부 데이터 저장공간의 원문 DB를 파기하지 않아 여전히 특정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게시글이 검색되었으므로. 법 제29조,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함

쟁점 조항 : 법 제29조, 제21조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철저한 파기 과정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타인에게 잘못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사건 개요

위원회의 판단 주요내용

조정 및 합의 결과

- 피신청인은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주거복지를 신청한 자임
- 신청인은 주거복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상자격
 소명을 요청하는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과실로 통보 이메일을 제3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함
- 이 이메일에는 신청인본인 및 신청인 부모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인소득 자산내역 등이 기재됨
- 피신청인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이 사건 이메일이 제3자에게 발송됨으로써 이메일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신청인 본인 및 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쟁점 조항 : 법 제29조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업무메일 일괄 전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Case #1)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신청인들은 분쟁조정 당사자들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면서 담당자의 과실로 당사자 모두의 개인정보를 조정당사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게 일괄 전송함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후 이메일을 수신한 법무법인 등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고, 조정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하고 분쟁조정 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함

위원회의 판단 주요내용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당사자 이외의 개인정보는 전송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겪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지급 책임있음

쟁점 조항 : 법 제28조

조정 및 합의 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한다.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업무메일 일괄 전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se #2)

사건 개요

위원회의 판단 주요내용

조정 및 합의 결과

- 피신청인(지자체)은 주민의 복지 증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참여한 자임
-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자들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건의 사항 등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수신인 지정 시 '개별 발송' 설정을 하지 아니하여 수신인들이 다른 수신인의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이메일을 발송함
- 이후 피신청인은 이메일주소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유출 대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시실을 공고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시실을 신고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지만 다른 수신인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
- 다만 피신청인이 이후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인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신청인이 조정안 불수락 조정 미성립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개인정보취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사건 개요

공무원은 피신청인의 자치사무인 불법노점 단속과 건설 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과 건설기계 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부여받음

- 이 사건 공무원은 부여받은 접근권한으로 자동차시스템 및 건설기계시스템 해당 시스템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에게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천 여건을 유출함
- →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목적외 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피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의결한 바 있음

위원회의 판단 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자동차관리법령상 부여받은 자동차 관련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을 벗어나 불법노점단속 업무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목적 외 이용) 위반됨
- 소속 사용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고,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음

쟁점 조항 : 법 제18조, 제28조, 제29조

조정 및 합의 결과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신청인과 그 자녀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에 대한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사건 개요

위원회의 판단 주요내용

조정 및 합의 결과

- 신청인은 세 자녀를 부양하는 母로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지자체)은 경찰서로부터 신청인의 아동학대 고발 내용을 이첩받아 담당자가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공함
- 피신청인이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신청인과 자녀들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와 함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신청인과 자녀들에 대한 단독 상담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됨
-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과 자녀들의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열람 요구를 거절함

- 신청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자녀들의 면담 자료는 신청인에게 공개될 경우 자녀들 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자녀들의 상담 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를 거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함
- 다만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사원과 면담한 자료로서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쟁점 조항: 보호법 제35조,제38조 정보공개법 제9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1주 이내에 신청인의 상담일지에 한하여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III.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및 오<u>남용 사례</u>

3.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분석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보험금 청구 시 과도한 의료정보 수집 등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사건 개요

조정 및 합의 결과

신청인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신청인측 현장대리인이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기간에 대한 의료기록을 수집하려고 하였고, 구체적인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여분의 의료기록 열람동의서를 징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보험금 지급심사 대상 기간과 연관성 없는 과도한 기간에 대한 수집행위를 금지하도록 추가 점검 및 교육 진행, 진료기록 등 열람동의서 징구 시 정확한 사전안내 및 동의, 불필요한 여분의 열람동의서 징구 및 백지위임 지양 등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합의 제안

조정 전 합의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상황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범죄 수사와 내사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범죄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주소, 업체명 등을 이용함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을 수집 및 분석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사항을 위반한 것인가?

#공개된 개인정보, #공개 목적, #동의 의사의 사회통념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장소 등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홈페이지의 성격, 게시물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단,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으로 판단(의결례)

III.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및 오남용 <u>사례</u>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상황

소속 공무원의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보나 의심 정황 발생 시, 제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사에 방호 목적으로 설치된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법 제15조, 제18조를 위반한 것인가?

#수집목적의 범위, #추가적 이용, #목적 외 이용, #공공과 민간

결과

■ (공공)「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

■ 따라서, 공공기관이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민간「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속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상황

현재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임직원의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 이용할 수 있는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제한이 근로기준법의 연관성

#근로기준법과 가족, #직장내에서의 가족정보수집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에 임금대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로는 볼 수 없음

결과

■ 따라서, 가족수당 계산을 위하여 생년월일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받을 수 있음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상황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시 법 제18조제2항 제7호를 적용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 내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 활동으로서 수사와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면 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 가능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상황

'감염병 확진자와 관련하여, "○○시 #9번 확진자 ○○센터 ○○부장" 등 직함이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또 그와 같은 공개가 가능한가? (* ○○ 부분은 실제 행정지역명과 소속기관명이 들어갈 예정)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 OO시 #XX 확진자. OO센터가 개인정보인가?

#개인정보의 정의, #타법령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소속기관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4번 확진자, 직책 또는 직함'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결과

■ 확진자에 대한 동선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함

III.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및 오남용 <u>사례</u>





☞ 개인정보의 제공

상황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보유한 질병·심신장애 진료과목과 판정 급수, 강력범죄경력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명과 선고형 등에 관한 정보를 각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 민감정보의 제공, 범죄정보와 사회복무요원의 연관성

#민감정보제공, #병무청의 민감정보 제공, #범죄경력과 군복무

-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처리하여서는 안됨
- 다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처리가능
- 현행 법령에는 지방병무청이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령해석만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가 복무기관에 자신의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대상과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령에 규정하여야 함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 개인정보의 파기

상황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주장하며 그 파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파기요구를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위배되는 것인가? 정보주체의 파기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가? #개인정보 파기 기준, #정정 삭제 요구권, #정정 삭제 요구의 거부, #개인정보수집 근거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가 법령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파기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구 가능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법령에 기반한 것'인 경우는 파기 불필요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 개인정보의 파기

상황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회원 탈퇴 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음. 다만 회원번호 신규 생성 등을 위하여. 회원번호만 따로 순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성 정보였던. 회원번호 000001는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회원가입 시 생성되는 회원번호는 개인정보인가? 개인정보 파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파기범위, #익명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따라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라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따라서, 관련정보가 모두 파기되어 연계 생성된 회원번호를 더 이상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이는 익명 정보로서 파기하지 않아도 됨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상황

회사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 되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의하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통사고 상황의 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금 관련 및 인사평가, 근무평정에 감점의 요인으로 영상정보를 활용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개인영상정보와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공개된 장소가 아닌 회사차량 내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적용되지 않아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달리 영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호법에 위반됨
- 한편, 사업장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로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 후 설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III.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 및 오남용 <u>사례</u>





상황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수행 및 교통단속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CCTV의 설치 목적에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활용할 수 있는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 CCTV를 최초 설치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CCTV 설치목적, #CCTV 유관법령, #타 법과의 관계

결과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1호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 대상지역·대상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됨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단속을 위하여 이미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라는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제38조에 따라「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상황

터널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CCTV를 최초 설치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CCTV 설치목적, #CCTV 유관법령

결과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석,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터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위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관한 정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3.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상황

안전성확보조치의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이슈사항 및 판단기준

▶ 우리 조직은 안전성확보조치 적용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안전성확보조치 적용기준, #안전성확보조치 의무범위

결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과 영업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